

배우자의 신분을 가진 자로서의 활동을 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 체류자격을 취소하지 않는 구체적 사례에 대하여

2012년 7월

법무성 입국관리국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이하 ‘입관법’) 상 일본인, 영주자 또는 특별영주자의 배우자로서 ‘일본인의 배우자 등’ 또는 ‘영주자의 배우자 등’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배우자의 신분을 가진 자로서의 활동을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하지 않고 체류하고 있는’ 경우, 이에 대해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 체류자격 취소 대상이 됩니다(입관법 제22조의4 제1항 제7호 참조).

법무성 입국관리국에서는 체류자격 취소제도에 대한 투명성을 높인다는 관점에서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 체류자격을 취소하지 않는 주요 사례를 아래와 같이 공표하기로 하였습니다(체류자격을 취소할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개별적·구체적 상황을 토대로 이루어지며, 반드시 후술하는 구체적 사례에 한정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체류자격을 취소하지 않는 구체적 사례에 대해서는 향후 체류자격 취소제도의 운용 상황을 토대로 필요에 따라 추가할 예정입니다.

(참고) 법무성 입국관리국에서는 ‘배우자의 신분을 가진 자로서의 활동을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하지 않고 체류하고 있는’ 사실이 판명되어, 체류자격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 또는 영주허가 신청의 기회를 주도록 배려하기로 하였습니다(입관법 제22조의5 참조). 배우자의 신분을 가진 자로서의 활동을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하지 않고 체류하고 있는 경우라 해도 일본 국적을 가진 친자녀를 감호·양육하고 있는 등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체류자격으로 변경하는 것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아래 —

1. 배우자의 폭력(이른바 가정폭력)을 이유로 일시적으로 몸을 피할 필요가 있거나 보

호가 필요한 경우

2. 자녀양육 등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배우자와 떨어져 따로 생활하고 있지만 생계는 함께 하고 있는 경우
3. 본국에 사는 친족의 상병 등을 이유로 재입국 허가(간주 재입국 허가 포함)를 받아 장기간 출국한 상태인 경우
4. 이혼조정 또는 이혼소송 중인 경우

<입관법 상의 규정>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초록)

(체류자격 취소)

제22조의4 법무대신은 별표1 또는 별표2의 위쪽 란의 체류자격을 갖고 일본에 체류하는 외국인(제61조의2 제1항의 난민 인정을 받은 자는 제외)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열거하는 어느 하나의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당 외국인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체류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1.~6. (생략)

7. 일본인의 배우자 등의 체류자격 [일본인의 배우자 신분을 가진 자 [아울러 일본인의 특별양자{민법(1896년 법률 제89호) 제817조의2의 규정에 따른 특별양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일본인의 자녀로서 출생한 자의 신분을 가진 자는 제외] 에 관계되는 것에 한정한다] 을 갖고 체류하는 자 또는 영주자의 배우자 등의 체류자격{영주자 등의 배우자 신분을 가진 자(아울러 영주자 등의 자녀로서 일본에서 출생하고, 그 후 계속하여 일본에 체류하고 있는 자의 신분을 가진 자는 제외)에 관계되는 것에 한정한다}을 갖고 체류하는 자가 그 배우자의 신분을 가진 자로서의 활동을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하지 않고 체류하고 있는 경우(해당 활동을 하지 않고 체류하고 있는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

8.~10.(생략)

제22조의5 법무대신은 전조 제1항에 규정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같은 항 제7호에 열거

하는 사실이 판명되어 체류자격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체류자격 변경신청 또는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주허가 신청의 기회를 주도록 배려하여야 한다.